2024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변경(안)

안 건 번 호 1

제안년월일 : 2024. 11. 11.

제 안 자 : 전주은화학교장

담 당 자:

1. 제안이유

2024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가. 2024.9.3.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10.1.)을 임시공휴일 지정(의결)하였으며

→ 학사일정 변경 필요, 긴급하게 적용된 사항으로서 추후 심의를 받고자 함.

나. 추가 2학기 주요행사 변경내용 반영

2. 제안내용

가. 교육과정(수업일수) 변경 운영: 임시공휴일 지정

날짜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24.10.1.(호)	수업일	임시공휴일	법정 수업일수 충족
2024.10.1.(至[)	191일	190일	

나. 기타 추가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추가)	비고(사유)
일상생활훈련(전)	9.19.(목)	9.10.(화)	시설 이용 및 사전답사 일정이 추석 연휴로 인해 일정 교체
사회적응훈련(전)	9.10.(화)	9.19.(목)	(장소: 일상생활훈련-대전 / 사회적응훈련 — 전주 객사)
AI 토너먼트 대회 주간	9.23.(월) ~ 9.27.(금)	10.21.(월) ~ 10.25.(금)	9.25.(수)~9.27.(금)에 연구학교 실증수업 운영 예정
진로활동 주간(고)	10.22(화)	10.21(월)~ 10.24.(목)	진로활동 예산 추후에 교부됨에 다양한 활동을 교내에서 체험 실습 (장소: 교내, 1일 2시간씩)
진로활동(중)	-	10.23.(수)	2학기 진로활동 추가 (장소: 부안 메타버스체험관)

붙임 2024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변경안) 1부. 끝.

2024학년도 전주은화학교 학사일정(변경안)

◆ 제2학기

휴 일.휴업일□ 재량휴업일□ 학교활동□

월		8		9		10		11		12	2025. 1 2				
일	요	 행 사	요일	행 사	요 일	행 사	요 일	행 사	요 일	행 사	요 일	행 사	요 일	항	! 사
1	일목		일	5 1	일 화	임시공휴일	급		일	5 1	수	신정	토		•
2	금		<u></u> 월		수	ВПОПЕ	토		월		목	<u></u> 경	일		
3	토		화		목	개천절	일		화		금	<u>.</u> 울	월	7	바학
4	일		수		금	재량휴업일	월	친구사랑주간 (~11.8.)	수		토		화		
5	월		목		토		화	,	목		일		수		
6	화		금		일		수		금	학생회장단 선거 교육과정 워크숍	월	방	목		
7	수		토		월		목		토		화	학	금		
8	목		일		화		금	더드림잔치	일		수		토		
9	금		월		수	한글날	토		월		목		일		
10	토		화	사회적응활동(고) 일상생활훈련(전)	막		뎰		화		巾		월		
11	일		수	사회적 응활동 (중)	ᇜ		월		수		토		화		
12	월		목		토		화		목		일		수	종업식	, 졸업식
13	화		금	사회적응활동(초)	일		수		금		월		목		학
14	수		토		월		목		토		화		금		기
15	목	광복절	일		화	다문화교육주간 (~10.18.)	금		일		수		토		
16	금		월	추석연휴	수		토		월		목		일		
17	토		화	추석	목		일		화		금		월		말
18	일		수	추석연휴	급	전공과 전형	월		수		토		화		방
19	월	개학	목	사회적응활동(전)	토		화		목		일		수		학
20	화		금	일상생활훈련 (전공)	일		수		금		월		목		
21	수		토		월	AI 토너먼트 대회 주간(~10.25.) 진로활동주간 (고, ~10.24.)	목		토		화		금		
22	목		일		화		급		일		수		토		
23	금		월		수	진로활동(중)	뽀		월		목		일		
24	토		화		목		일		화		금		월		
25	일		수		금		월		수	성탄절	토		화		
26	월	상담주간 (~8.30)	목		토		화		목		일		수		
27	화		금		뎰		수		금		월		목		
28	수		토		월		목		토		화	설연휴	금		
29	목		일		화		먀		일		수	설날			
30	금		월		수		토		월		목	설연휴			
31	31 E			목				화	겨울방학식	금			-		
수업 일수		10		18		19		21		21		0	8	3	97
업수 일 유일		21		12		12		9		10		31	2	0	115
			기					2학기					<u> </u>		
계		수업	일=	È				95					190		
		휴일	일=	È				115					175		
	겨울	방학: 18일	일(20)25. 1. 2.	~ 2	025. 1. 27	.)	학년말 방학	학: 1	12일(2025. :	2. 1	3. ~ 202	25. 2	2. 28	.)

전주은화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안 건 번 호 2

제안년월일 : 2024. 11. 11.

제 안 자 : 전주은화학교장

담 당 자:

1. 관련 근거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34호, 2023. 10. 29., 일부개정]

나. 2024「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2. 제안이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공표·시행과 전주은화학교 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정된 2023학년도 학교규칙의 [제17장학생생활지도]를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붙임 1. 2024학년도 전주은화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비표 1부.
 - 2. 전주은화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1부. 끝.

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신·구 대비표

전주은화학교

현 행	2024.12.1. 개 정 안	개정 사유
	31조(물품 보관) 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른 물품의 분리 요건, 기간, 장소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수업시간 동안 교실 내 지정 장소에 학생의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9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28조에서 금지한 물품을 학생이 소지한 경우, 3일 동안 교무실에 학생의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한 물품의 경우,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관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학생의 물품을 폐기 조치할 수 있다.	전주은화학교 학교 규칙
	제36조(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요건,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3호 지도(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수업 시간 내 일부의 기간동안 교실 복도 또는 교실 간 공간으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때, 학습지 등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한다수업 중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이나 자해, 기물파손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여러 차례 지도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수업 종료 시까지 심리안정실, 학급 교실(교과 수업의 경우), 별도의 교과 교실 또는 공간으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때, 행동 성찰문 또는 학습지 등의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한다. 2. 제4호 지도(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따른 특정 장소로의분리)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60분 이내의 시간 동안심리안정실, 교무실, 별도의 교과 교실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때, 행동 성찰문 등의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한다.	

전주은화학교 생활규정

제1차 개정 2014. 3. 1

제2차 개정 2015. 3. 1

제3차 개정 2017. 3. 1

제4차 개정 2020. 3. 1

제5차 개정 2024. 12.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전주은화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 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9. 학칙개정절차
-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1) 「}교육기본법」제12조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사의 교육권)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2)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 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와 제91조 제1항³⁾에 근거하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 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5조에 근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

^{10.} 산업계의 수요에 식섭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성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능학교"라 한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4)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 익을 주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5)

- 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6)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7)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에 관한 권리】8)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 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6조에 근거.

^{5)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에 근거

^{6)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8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9조에 근거

^{8)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0조에 근거

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9)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10)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11)

- 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12)
- ③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13)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14)

- ①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15)

^{9)「}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1조에 근거.

^{10)「}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2조에 근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4219(2018.7.5.)-"편안한 교복착용 관련 안내"

^{11)「}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3조에 근거,

¹²⁾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실내 CCTV 설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실내에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수업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저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가 노출되므로 실내 CCTV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¹³⁾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quot;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관행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검사·평가 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므로 그 개선을 권고한다."

^{1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4조에 근거.

¹⁵⁾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식)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탈부착식 이름표보급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정보에 관한 권리] 16)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¹⁷⁾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18)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6조 (표현의 자유) 19)

-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20)

- ①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16)「}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5조에 근거.

^{1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6조에 근거.

¹⁸⁾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성과 약속의 의미로 학생에게 권고하고 교육 적 지도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증표로 반성문과 서약 서를 강요하는 양심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9)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7조에 근거.

^{20)「}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8조에 근거.

- 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
- ⑤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²¹⁾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22)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건강에 관한 권리】23)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제21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²⁴⁾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학생 생활

^{2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9조에 근거.

^{22)「}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20조에 근거.

^{23)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25조에 근거.

^{2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27조에 근거.

제22조【기본행동】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 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하다.

제23조【수업 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⑥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24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25조【용모】

① 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6조【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27조【개인 소유물】

-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8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 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음란한 내용을 닦은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차량이나 오토바이
- 9. 기타「청소년 보호법」제2조²⁵⁾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25) 「}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quot;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quot;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 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29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③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 ④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 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제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물품 보관】

- 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9항에 따른 물품의 분리 요건, 기간, 장소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수업시간동안 교실 내지정 장소에 학생의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9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학생생활규정 제28조에서 금지한 물품을 학생이 소지한경우, 3일 동안 교무실에 학생의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분리보관한 물품의 경우,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관 기일 경과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학생의 물품을 폐기 조치할 수 있다.

제32조【전자기기 사용】 26)

-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 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 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26)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3조 ④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제하기보다는 학생에게 사용예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휴대전화기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할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하다는 의미이다. 학교에 따라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방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사적소유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휴대전화 보관 후 분실 시 학교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한다. (교육부), 학교 관리 중 분실한 휴대폰 등 보상 지원계획 안내(인성건강과-35456 2013.12.17.)

^{*} 일부 학교의 학교규칙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벌칙으로 전자기기를 학교가 상당 기일 동안 일시 수거하는 사례가 있음.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못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됨. 학교규칙 운영 및 제·개정 운영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919 2014.5.19.)

[※] 학생개인물품 소지 관리에 관한 정책권고(민주시민교육과-3800 2019. 5. 3.)

제34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 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7)

-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5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 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행동개선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6조【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 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리 요건,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제3호 지도(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수업 시간 내 일부의 기간동안 교실 복도 또는 교실 간 공간으로 학생을

²⁷⁾ 체벌금지 조항과 교사의 권한 및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권고하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최소한의 학생지도의 기준선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체벌 금지관련 근거

[「]대한민국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때, 학습지 등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한다.

-수업 중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이나 자해, 기물파손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여러 차례 지도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수업 종료 시까지 심리안정실, 학급 교실(교과 수업의 경우), 별도의 교과 교실 또는 공간으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때, 행동 성찰문 또는 학습지 등의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한다.

2. 제4호 지도(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따른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60분 이내의 시간 동안 심리안정실, 교무실, 별도의 교과 교실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때, 행동 성찰문 등의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한다.

제37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28)와 징계

제39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8) &}quot;징계위원회"로 명칭을 정할 수도 있으나, 징계도 교육의 일부로 보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생활부 기획,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과정별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교육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²⁹⁾
-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생활부 기획,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초등학교 교무기획, 중학교 교무기획, 고등학교 교무기획, 전공과 교무기획, 학부모대표 2인으로 구성하되, 생활교육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징계 원칙】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4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³⁰⁾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31): 4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4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1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³²⁾: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전공 과에 해당)
 - 1. 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 2.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 ⑥ 후계·후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²⁹⁾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정수는 학교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³⁰⁾ 복수 징계를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와 달리 반드시 하나의 징계만 할 수 있음. 징계의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정한 기간과 동일해도 됨

³¹⁾ 조치(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32) &#}x27;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 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 가능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2조【징계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 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전공과에 해당)
 -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 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 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 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1. 학교환경 정리활동
 -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5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 지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경감과 해제】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33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위원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대표 4인, 교감, 안전생활 부 기획, 학부모 대표 2인, 총 8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교사회의 의결
- 3. 학부모회의 의결
- 4. 학생회의 의결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49조【문헌조사와 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

³³⁾ 전라북도교육청 권장 사항이며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이다.

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0조【심의와 결정】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51조【연수와 교육】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 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생활 교육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4학년도 전주은화학교 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안 건 번 호 3 제안년월일 : 2024. 11. 12.

제 안 자: 전주은화학교장

담 당 자:

1. 제안 이유

○ 관련: 전라북도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5조(추가경정예산)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목적사업비 교부 및 세출예산변경요구 등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고자 함.

2. 예산 심의 사항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

(단위:천원)

	구 분제입1. 이전수입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2. 이전수입기타이전수입3. 자체수입수익자부담수입4. 자체수입행정활동수입5. 기타수입전년도이월금세입합계1. 인적자원운용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3. 기본적 교육활동4. 선택적 교육활동5. 교육활동 지원6. 학교 일반운영7. 학교 재무활동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1.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2,305,668	2,030,980	274,688	
	2.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5,730	5,730	0	
7)] ()]	3. 자체수입	수익자부담수입	74,480	74,480	0	
세입 	4.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23,335	10,068	13,267	
	5.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0,598	10,598	0	
		세 입 합 계	2,419,811	2,131,856	287,955	
	1. 인적자원	순용	221,275	154,296	66,979	
	2.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1,001,916	978,292	23,624	
	3. 기본적 고	고육활동	193,456	195,771	-2,315	
カルシ	4. 선택적 3	고육활동	467,199	316,551	150,648	
세골	5. 교육활동	· 지원	231,328	199,735	31,593	
	6. 학교 일투	마운영	304,637	281,211	23,426	
	7. 학교 재년	무활동	0	6,000	-6,000	
		세 출 합 계	2,419,811	2,131,856	287,955	

□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

(단위: 천원)

순	세부 사업명	편성 내역	금액	재원	비고
1	연구학교운영	교수학습자료 구입비	300	목적사업비	
2	연구학교운영	연수비	-300	목적사업비	
3	연구학교운영	검증비	100	목적사업비	
4	연구학교운영	연수비	-100	목적사업비	
5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치료사 인건비	-6,777	경상운영비	
6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치료사 기관부담금	-296	경상운영비	
7	특수교육교과활동	언어 학습물품 및 프로그램 구입	7,073	경상운영비	
8	학교급식운영	급식재료비	2,402	목적사업비	
9	학교급식운영	소모품구입비	-6,000	목적사업비	
10	교직원복지	교원-학부모 아카데미 물품 구입	200	목적사업비	
11	교직원복지	교원-학부모 아카데미 강사비	-200	목적사업비	
12	학부모협력	학부모 교육 운영비	400	기본운영비	
13	학부모협력	강사비	-400	기본운영비	
14	교과활동지원	직업준비 학습자료 구입	-1,200	기본운영비	
15	교과활동지원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상담 운영비	-200	기본운영비	
16	교과활동지원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비	-600	기본운영비	
17	교과활동지원	진로 프로그램 운영비	2,000	기본운영비	

순	세부 사업명	편성 내역	금액	재원	비고
18	부서기본운영	교육과정운영 워크숍 차량 임차료	-600	기본운영비	
19	부서기본운영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비	600	기본운영비	
20	교무학사운영	교육실습생 실습물품	-150	기본운영비	
21	정보화실운영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5	기본운영비	
22	정보화실운영	컬러복사기 임대료	-1,200	기본운영비	
23	정보화실운영	전산용품 및 방송장비 유지관리	1,800	기본운영비	
24	정보화실운영	컴퓨터유지보수관리	-152	기본운영비	
25	정보화실운영	출장여비	-225	목적사업비	
26	정보화실운영	운영물품 구입	255	목적사업비	
27	정보화실운영	고용산재보험료	-30	목적사업비	
28	교과활동지원	(고)수학과 학습자료구입	-402	기본운영비	
29	교과활동지원	(고)체육과 학습자료구입	-328	기본운영비	
30	교과활동지원	(고)직업1 학습자료구입	132	기본운영비	
31	부서기본운영	교육과정설명회관련경비	-50	기본운영비	
32	부서기본운영	특수교육지도사실 비품 구입	-379	기본운영비	
33	부서기본운영	특수교육지도사실 운영비	379	기본운영비	
34	진로직업교육	직업의 세계 프로그램 체험비 및 재료비	1,000	목적사업비	
35	진로직업교육	고등학교 직업교육 소개하기	-318	목적사업비	
36	진로직업교육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222	목적사업비	

순	세부 사업명	편성 내역	금액	재원	비고
37	진로직업교육	직업의 세계 프로그램 간식 및 식비	-571	목적사업비	
38	진로직업교육	고등학교 직업교육 소개하기 간식 및 식비	-13	목적사업비	
39	진로직업교육	협의회비	-10	목적사업비	
40	진로직업교육	직업교과 학습교구 및 실습재료비	134	목적사업비	
41	진로직업교육	직업교과 학습교구 및 실습재료비	656	목적사업비	
42	진로직업교육	농산물 수확체험 직무체험비	-180	목적사업비	
43	진로직업교육	일상생활활동 직무체험비	-53	목적사업비	
44	진로직업교육	자격증 시험 재료 구입비	-224	목적사업비	
45	진로직업교육	농산물 수확체험 간식 및 식비	-102	목적사업비	
46	진로직업교육	직무체험 간식 및 식비	-20	목적사업비	
47	진로직업교육	대학 진로체험 간식 및 식비	-50	목적사업비	
48	진로직업교육	협의회비	-27	목적사업비	
49	직업교육 운영	직업기능경진대회 운영비	-637	기본운영비	
50	직업교육 운영	진로상담실 운영비	-500	기본운영비	
51	자율활동	한마음 체육대회 상품 구입비	-11	기본운영비	
52	자율활동	한마음 체육대회 간식 구입비	-130	기본운영비	
53	자율활동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100	기본운영비	
54	자율활동	그리기대회 운영비	-174	기본운영비	
55	자율활동	그리기대회 시상품 구입비	-84	기본운영비	

순	세부 사업명	편성 내역	금액	재원	비고
56	자율활동	외부공연지원	-300	기본운영비	
57	자율활동	학습발표회 현수막 제작비	230	기본운영비	
58	자율활동	학습발표회 부서별 준비물 구입비	-2,000	기본운영비	
59	자율활동	학습발표회 간식 구입비	-474	기본운영비	
60	자율활동	학습발표회 행사 운영비	1,500	기본운영비	
61	자율활동	예술교육 행사 운영비	11	목적사업비	
62	자율활동	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비	-11	목적사업비	
63	체육 교과활동	문화예술강사 수업준비물 구입비	-73	기본운영비	
64	교직원역량강화	성교육 운영	-600	기본운영비	
65	학교폭력예방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비	-100	기본운영비	
66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위원 여비	-300	기본운영비	
67	자율활동	학생자치회 운영(선거)	300	기본운영비	
68	자율활동	학생자치회 운영(부서별 활동비)	150	기본운영비	
69	학생생활 상담지도	상담 수업용품	-425	기본운영비	
70	학생생활 상담지도	성격 및 심리검사 도구 구입	225	기본운영비	
71	학생생활 상담지도	학부모 교직원 심리 상담과 교육	200	기본운영비	
72	교과활동지원	(중)음악과 학습자료구입	-483	기본운영비	
73	교과활동지원	(중)직업2 학습자료구입	-33	기본운영비	
74	교과활동지원	(중)국어 학습자료구입	-35	기본운영비	

순	세부 사업명	편성 내역	금액	재원	비고
75	학생복지운영	운영비	25,992	경상운영비	
76	학생복지운영	매각 감정평가	278	경상운영비	
77	학생복지운영	통학버스 구입비	-26,270	경상운영비	
78	부서기본운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8	기본운영비	
79	학교시설장비유지	전기안전관리용역	396	기본운영비	
80	학교시설장비유지	전기요금	80	목적사업비	
81	학교시설장비유지	협의회비	-80	목적사업비	
82	교직원대체인건비	경비원 인건비	2,500	기본운영비	
83	교직원대체인건비	시설관리원 인건비	1,500	기본운영비	
84	교직원대체인건비	전일제강사 인건비	-1,800	기본운영비	
85	교직원대체인건비	조리종사원 연간근로일수 초과분 인건비	-200	기본운영비	
86	교직원대체인건비	조리종사원 초과근무수당	200	기본운영비	
87	교직원대체인건비	특수교육지도사 초과근무수당	2,000	기본운영비	
88	교직원대체인건비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대체 인건비	-272	기본운영비	
89	교직원대체인건비	행정대체인건비	-2,000	기본운영비	
90	교직원대체인건비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500	기본운영비	
91	교직원대체인건비	경비원 법정부담금	-2,500	기본운영비	
92	학교시설장비유지	전기요금	1,000	기본운영비	
93	학교시설장비유지	무인기계용역	99	기본운영비	

순	세부 사업명	편성 내역	금액	재원	비고
94	예비비	वी मी मी	-6,000	기본운영비	
95	학교시설장비유지	소규모시설수선	21,933	기본운영비	
96	교육환경개선	2024년 교수학습환경개선 사업비	17,000	목적사업비	
97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 6월 특수교육지도사, 급식종사원 대체인력 인건비	2,305	목적사업비	
98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12,040	목적사업비	
99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추가 활동비	6,300	목적사업비	
100	정보화실운영	2024년 디지털 튜터 운영비	12,000	목적사업비	
101	직업교육운영	2024학년도 하반기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생 인건비	13,985	목적사업비	
102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학년도 2학기 특수학교 정원외 기간제교원 인건비	26,906	목적사업비	
103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년 8월말 기준 특수학교 기간제교원 퇴직금	7,022	목적사업비	
104	학교폭력예방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경감 강사비	2,700	목적사업비	
105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년 7~8월 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력 인건비	584	목적사업비	
106	학생복지운영	2024.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예산(2차)	17,240	목적사업비	
107	방과후학교운영	2024. 중도중복 장애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비	16,560	목적사업비	
108	직업교육운영	2024. 특수학교 직업실기 역량강화 운영비	5,000	목적사업비	
109	방과후학교운영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비 정산분	81,400	목적사업비	
110	직업교육운영	2024학년도 대학생활 체험 지원비	12,840	목적사업비	
111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년 9월 통학버스 안전 지도사 대체인력 인건비	130	목적사업비	

순	세부 사업명	편성 내역	금액	재원	비고
112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년 9월 급식종사원 대체 인력 인건비	195	목적사업비	
113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년 9월 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력 인건비	2,956	목적사업비	
114	학생복지운영	2024학년도 4분기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4,257	목적사업비	
115	방과후학교운영	2024년 특수학교 늘봄학교 장애학생 맞춤지원 운영비	22,000	목적사업비	
116	교직원대체인건비	2024학년도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비	9,213	목적사업비	
117	학교급식운영	2024학년도 친환경농산물, 우수 농축산물 부식비	5,725	목적사업비	
	,	세출 합계	287,955		

2024 학년도 전주은화학교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서 (안) (3차추경예산)

전주은화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구분 : 추경3회

예산안확정일자	2024-11-12	예산액	2,419,811,000
1000	I	" - '	7 7 7

제1조 2024학년도 전주은화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419,811,000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 또는 학교발전기금 전입금은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1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 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 2. 각종 공과금

2024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J	부 목	경정	기정	טויי די די) ネーl ニ (ol)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1.0	전수	입			2,311,398	2,036,710	274,688		
	1.지	방교-	육행기	정기관이전수입	2,305,668	2,030,980	274,688		
		1.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1.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305,668	2,030,980	274,688		
					2,305,668	2,030,980	274,688		
		1. 학교운영비전입금		1,169,116	1,169,116	0			
				2.목적사업비전입금	1,136,552	861,864	274,688	무상급식비 : -3,598,000원 * 1개교 = -3,598	,000
								(성립전_3추)친환경농산물지원 : 5,225,000원 * 1개교 = 5,225	,000
								정원내외 기간제교사 퇴직금 : -3,502,000원 * -3,502	,000
								(성립전_3추)정원내외 기간제교사 퇴직금 : 7,022,000원 * 1개교 =	,000
								(성립전_3추)정원내외 기간제교사 퇴직금 : 3,503,000원 * 1개교 =	,000
								(설립저 3추)우수놋축수사묵부신비 : 500 000	,000
								(성립전_3추)통학버스 지원 : 17,240,000원 * 17,240	,000
								2024년 2학기 정원외 기간제교사 인건비 : 3,502,000원 * 1개교 =	,000
								(성립전_3추)2024년 2학기 정원외 기간제교사 인건비 : 21,262,000원 * 1개교 =	,000
								(성립전_3추)2024년 2학기 정원외 기간제교사 4대보험 법정부담금 : 2,141,000원 * 1개교 =	,000
								(성립전_3추)2024. 학교폭력예방지원학교 : 2,700,000원 * 1개교 = 2,700	,00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력 인건비 : 2,110,000원 * 1개교 =	,000
								(성립전 3추)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력 인건비	,00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력 인건비 : 2,956,000원 * 1개교 =	,00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원인력 보드미 활동비 : 12,040,000원 * 1개교 =	,00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원인력 보드미 활동비 : 6,300,000원 * 1개교 =	,000
								(성립전_3추)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운영 : 13,985,000원 * 1개교 =	,000
								(성립전_3추)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운영 : 5,000,000원 * 1개교 = 5,000	,000
								(성립전_3추)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운영 : 12,840,000원 * 1개교 =	,000
								(설립저 3추)급신족사위 대체 이거비 :	,000
								(설립저 3추)급신족사위 대체 이거비 :	,000
								195,000년 * 1개교 - (성립전_3추)방과후학교 운영(목적) : 16,560,000원 * 1개교 =	,000
								16,500,000원 * 1개교 = (성립전_3추)방과후학교 운영(목적) : 81,400,000원 * 1개교 =	,000

2024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과 목				구 목	경정	기정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 13- 6 П	[E/]_(U)	14
								(성립전_3추)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 4,257,000원 * 1개교 =	
								통학버스안전지도사 대체인건비 : -72,000원 * -72,000 1개교 =	
								(성립전_3추)교수학습환경개선사업비 : 17,000,000원 * 1개교 =	
								(성립전_3추)디지털 튜터 운영비 : 12,000,000 원 * 1개교 = 12,000,000	
								(성립전_3추)통학버스안전지도사 대체인건비 : 130,000 130,000원 * 1개교 =	
								(성립전_3추)늘봄학교 장애학생 맞춤지원 강화 : 22,000,000원 * 1개교 = 22,000,000	
								(성립전_3추)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 9,213,000 9,213,000원 * 1개교 = 9,213,000	
	2.7	타이	전수위	김	5,730	5,730	0		
		1.기타공공이전수입			5,730	5,730	0		
			1.7]	타공공지원금	5,730	5,730	0		
				1.기타공공지원금	5,730	5,730	0		
2.7	2.자체수입 97,					84,548	13,267		
	1. 힉	부모	부담-	⁻ 입	74,480	74,480	0		
		1.수	익자-	부담수입	74,480	74,480	0		
			1.급식비		74,480	74,480	0		
				1.급식비	74,480	74,480	0		
	2. 행	정활 	동수약	립	23,335	10,068	13,267		
		1.ス	ŀ산수'	ol H	13,000	0	13,000		
			1.자	산매각대	13,000	0	13,000		
				1.자산매각대	13,000	0	13,000	통학차량 매각대금 : 13,000,000원*1대= 13,000,000	
		2.기타행정활동수입			10,335	10,068	267		
			1.0	자수입	7,200	7,000	200		
				1.이자수입	7,200	7,000	200	이자수입 : 200,000 = 200,000	
			2.7]	타행정활동수입	3,135	3,068	67		
				1.기타행정활동수입	3,135	3,068	67	감사 회수금 : 67,000원*1식= 67,000	
3.7	3.기타수입 10,59				10,598	10,598	0		
	1.전	[년도	이월급		10,598	10,598	0		
	1.순세계잉여금				10,598	10,598	0		

2024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ĭ	가 목	경정 예산액	기정	비고즈카	۸lネィl ۶ (ol)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기정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112
			1.순세계잉여금		10,598	10,598	0		
				1.순세계잉여금	10,598	10,598	0		
세입합계					2,419,811	2,131,856	287,955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사업		경정	기정	비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년 월기(조년 전)	
1.인적자원	운용			221,275	154,296	66,979		
1.7	타 교직	원보수		208,475	140,896	67,579		
	1. 교조	[원대체인]	건비	208,475	140,896	67,579		
		1.직원대	체인건비	74,144	68,046	6,098		
			1.공무직인건비	55,261	51,061	4,200	경비원 인건비 : 2,500,000 =	2,500,000
							조리종사원 연간근로일수 초과분 인건비 : -200,000 =	-200,000
							조리종사원 초과근무수당 : 200,000 =	200,000
							특수교육지도사 초과근무수당 : 2,000,000 =	2,000,000
							전일제강사 인건비 : -1,800,000 =	-1,800,000
							시설관리원 인건비 : 1,500,000 =	1,500,000
			2.기간제근로자인건비	14,969	11,465	3,504	행정대체인건비 : -2,000,000 =	-2,000,000
							(성립전_3추)조리종사원 대체인건비 : 194,420원*1식=	195,000
							(성립전_3추)조리종사원 대체인건비 : 195,000원*1식=	195,00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건비 : 1,791,000원*1교=	1,791,00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건비 : 2,880,880원*1식=	2,881,00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건비 : 291,630원*2월=	584,000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대체 인건비 : -272,000 =	-272,000
							(성립전_3추)통학버스 안전지도사 대체 인 건비 : 129,550원*1식=	130,000
			3. 공무직법정부담금	3,914	5,520	-1,606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500,000 =	500,000
							경비원 법정부담금 : -2,500,000 =	-2,500,00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도사 대체 기관부 담금(목적) : 74,890원*1명=	75,00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도사 대체 기관부 담금(목적) : 318,250원*1식=	319,000
		2.기간제	교원인건비	101,991	58,850	43,141		
			1.기간제교원인건비	97,708	56,708	41,000	(성립전_3추)정원외 기간제 인건비 : 21,262,000원*1교=	21,262,000
							(성립전_3추)기간제교사 퇴직금 : 7,021,330원*1식=	7,022,000
							(성립전_3추)기간제교사 퇴직금 : 3,502,520원*1교 =	3,503,000
							(성립전_3추)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목 적): 9,212,500원*1교=	9,213,000
			2.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4,283	2,142	2,141	(성립전_3추)정원외 기간제 4대보험 법정 부담금 : 2,140,800원*1교=	2,141,000

			사임		경정	기정	用亚	al 초키구(al)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3.특수교 적)	육지원인력보드미(목	32,340	14,000	18,340		
				1. 일반수용비	32,340	14,000	18,340	(성립전_3추)특수교육지원인력 보드미 활 동비 : 35,000원*86일*4명=	2,040,000
								(서리저 2초)트스교유지의이러 버드미 하	6,300,000
	2.교건	식원 복	지 및 역령	·	12,800	13,400	-600		
		1.교직	원역량강:	화	4,500	5,100	-600		
		1.직무연수		4,500	4,500	0			
				1. 일반수용비	4,500	4,500	0		
			2.교직원	연수	0	600	-600		
				1.운영수당	0	600	-600	성교육 운영 : -600,000 =	-600,000
		2.교직	원복지		8,300	8,300	0		
			1.동호회	지원	3,500	3,500	0		
				1. 교직원복지비	3,500	3,500	0		
		2.교원상해	해치료비	300	300	0			
			1.교직원복지비	300	300	0			
			3.교원치	유중점학교 운영(목적)	2,500	2,500	0		
				1.운영수당	800	800	0		
				2. 교직원복지비	1,224	1,224	0		
				3.목적사업업무추진비	476	476	0		
			4.교원-학 적)	막부모 만남프로젝트(목	2,000	2,000	0		
				1. 일반수용비	1,600	1,400	200	교원-학부모 아카데미 물품 구입 : 200,000 =	200,000
				2.운영수당	0	200	-200	교원-학부모 아카데미 강사비 : -200,000 =	-200,000
				3.목적사업업무추진비	400	400	0		
2. 학식	생복지/	교육격	차 해소		1,001,916	978,292	23,624		
	1.급스	식 관리			215,565	213,438	2,127		
		1.학교	급식운영		215,565	213,438	2,127		
			1.급식재	료구입비	191,535	183,408	8,127		
				1.급식용식재료비	191,535	183,408	8,127	급식식재료비 : -3,598,000+6,000,000 =	2,402,000
								(성립전_3추)급식식재료비 : 5,725,000*1 교 =	5,725,000

			사업		경정	기정	비교	2] マーニ (0])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2.급식운	영비	23,780	29,780	-6,000		
				1.일반수용비	15,760	22,760	-7,000	소모품구입비 : -7,000,000 =	-7,000,000
				2.연료비	3,500	2,500	1,000	도시가스비 : 1,000,000 =	1,000,000
				3.비품구입비	4,520	4,520	0		
			3.급식종 적)	사자 폐암건강검진(목	250	250	0		
				1.교직원복지비	250	250	0		
	2.보건	<u></u> 刊관리			39,051	39,051	0		
		1.[국:	고]학생및	교직원보건안전관리	15,158	15,158	0		
			1.학생건	강검사	2,054	2,054	0		
				1. 학생복지비	2,054	2,054	0		
			2.보건실	운영	8,990	8,990	0		
				1.일반수용비	3,890	3,890	0		
				2.운영수당	1,500	1,500	0		
				3.교육운영비	800	800	0		
				4. 학생복지비	2,800	2,800	0		
			3.[국고] 운영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700	700	0		
				1.교육운영비	700	700	0		
			4. 중도중 형 교육(복 장애학생 개별맞춤 목적)	3,000	3,000	0		
				1.교육운영비	3,000	3,000	0		
			5.여학생	위생용품 지원(목적)	414	414	0		
				1.교육운영비	414	414	0		
		2.학교	·환경위생	관리	23,893	23,893	0		
			1.먹는물	관리	7,200	7,200	0		
				1.일반수용비	7,200	7,200	0		
			2. 공기질	 측정	15,643	15,643	0		
				1.일반수용비	15,643	15,643	0		
			3. 방역관	리	1,050	1,050	0		
				1.일반수용비	1,050	1,050	0		

			사일]	경정	기정	비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3.학생	생복지			747,300	725,803	21,497	
		1. 학생	복지운영		747,300	725,803	21,497	
			1.학생교	과서구입	2,735	2,735	0	
				1.교육운영비	2,735	2,735	0	
			2.통학차	량(임차)운영	156,800	139,560	17,240	
				1.일반 수용 비	156,800	139,560	17,240	(성립전_3추)통학버스(전세) 임차료 : 17,240,000 17,240,000원*1식=
			3.통학차	량(직영)운영	58,002	31,732	26,270	
				1.일반수용비	58,002	31,732	26,270	통학버스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경상) : 278,000 = 278,000
								통학버스 운영비(경상) : 25,992,000 = 25,992,000
			4.통학차 망 운영(량 관리시스템무선통신 목적)	4,650	4,650	0	
				1.기타공공요금	4,650	4,650	0	
			5.전북에 적)	듀페이 입학지원금(목	8,500	8,500	0	
				1. 학생복지비	8,500	8,500	0	
			6.특수교	육대상자 통학비(목적)	22,883	18,626	4,257	
				1. 학생복지비	22,883	18,626	4,257	(성립전_3추)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 4,257,000원*1식=
			7. 전기통	학버스 구입	493,730	520,000	-26,270	
				1.비품구입비	493,730	520,000	-26,270	전기 통학버스 구입 : -26,270,000 = -26,270,000
3.기년	본적 교	육활동			193,456	195,771	-2,315	
	1.교괴	활동			118,191	119,413	-1,222	
		1. 교과	활동지원		75,931	77,080	-1,149	
			1.보결수	업관리	7,000	7,000	0	
				1.기타수당	7,000	7,000	0	
			2.특수교	육보조공학기기	16,000	16,000	0	
				1.비품구입비	16,000	16,000	0	
			3.교과운	영	23,931	25,080	-1,149	
				1.교육운영비	23,931	25,080	-1,149	(중)국어과 학습자료구입 : -35,000 = -35,000
								(중)음악과 학습자료구입 : -483,000 = -483,000
								(중)직업2 학습자료구입 : -33,000 = -33,000

			사업		경정	기정	月교	ね ネッ ラ (ol)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고)수학과 학습자료구입 : -402,000 = -402,000
								(고)체육과 학습자료구입 : -328,000 = -328,000
								(고)직업1 학습자료구입 : 132,000 = 132,000
			4.고교학	점제운영	29,000	29,000	0	
				1.일반수용비	930	1,530	-600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비 : -600,000 = -600,000
				2.교육운영비	27,800	27,200	600	진로 프로그램 운영비 : 2,000,000 = 2,000,000
								직업준비 학습자료 구입 : -1,200,000 = -1,200,000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상담운영비 : -200,000 = -200,000
				3. 일반업무추진비	270	270	0	
		2. 과학	- 교과활동	<u>.</u>	210	210	0	
			1. 과학실	운영	210	210	0	
				1.교육운영비	210	210	0	
		3.체육	- 교과활동	=	18,877	18,950	-73	
			1.교과운	ල්	3,377	3,450	-73	
				1.교육운영비	2,377	2,450	-73	문화예술강사 수업준비물 구입비 : -73,000 =
				2.비품구입비	1,000	1,000	0	
			2. 장애학 원	생 문화예술체육활동지	13,000	13,000	0	
				1.운영수당	13,000	13,000	0	
			3. 장애학 훈련비(독	생 체육대회 대표선수 구적)	2,500	2,500	0	
				1.교육운영비	2,500	2,500	0	
		4.특수	교육교과	<u></u> 활동	7,073	7,073	0	
			1.특수교	육치료사 인건비(경상)	0	7,073	-7,073	
				1.기간제근로자인건비	0	6,777	-6,777	특수교육치료사 인건비 : -6,777,000 = -6,777,000
				2.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0	296	-296	특수교육치료사 기관부담금 : -296,000 = -296,000
			2. 언어치. (경상)	료 학습 및 프로그램	7,073	0	7,073	
			1.비품구입비		7,073	0	7,073	언어 학습 물품 및 프로그램 구입 : 7,073,000 707,300*10대 =
		5. 전문 교과활동		12,100	12,100	0		
			1.전문교	과운영	11,000	11,000	0	

			사업 세부항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목	원가통계비목	게단기	게신ㅋ	о́ TI		
				1.교육운영비	11,000	11,000	0		
			2.신입생	입학전형	1,100	1,100	0		
				1.운영수당	800	800	0		
				2.교육운영비	300	300	0		
		6.정보	L교과활동		4,000	4,000	0		
				크 활용 업무효율화 콘 실사업(목적)	4,000	4,000	0		
				1.교육운영비	3,600	3,600	0		
				2.목적사업업무추진비	400	400	0		
	2.창의	니적 체 [*]	험활동		67,265	68,358	-1,093		
		1.자율	활동		29,265	30,358	-1,093		
			1.학생회	활동지원	6,100	5,650	450		
				1.교육운영비	6,100	5,650	450	학생자치회 운영(부서별 활동비) : 150,000 =	150,000
								학생자치회 운영(선거) : 300,000 =	300,000
			2. 학예회		4,300	5,044	-744		
				1.교육운영비	4,300	5,044	-744	학습발표회 현수막 제작비 : 230,000 =	230,000
								학습발표회 부서별 준비물 구입비 : -2,000,000 =	-2,000,000
								학습발표회 간식 구입비 : -474,000 =	-474,000
								학습발표회 행사 운영비 : 1,500,000 =	1,500,000
			3. 학급교	육활동경비	10,400	10,400	0		
				1.교육운영비	10,400	10,400	0		
			4.실기대	ত্র	942	1,500	-558		
				1.교육운영비	942	1,500	-558	그리기대회 운영비 : -174,000 =	-174,000
								그리기대회 시상품 구입비 : -84,000 =	-84,000
								외부공연지원 : -300,000 =	-300,000
			5.체육대	<u></u> 회	3,523	3,764	-241		
				1.교육운영비	3,523	3,764	-241	한마음 체육대회 상품 구입비 : -11,000 =	-11,000
								한마음 체육대회 간식 구입비 : -130,000 =	-130,000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 -100,000 =	-100,000

			사임		경정	기정	비교)] ~ = = (ol)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6.학교민	주시민교육 운영지원	2,000	2,000	0		
				1.운영수당	2,000	2,000	0		
			7.학교예	술교육 지원(목적)	2,000	2,000	0		
				1.교육운영비	2,000	2,000	0	예술교육 행사 운영비 : 11,000 =	11,000
								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비 : -11,000 =	-11,000
		2. 현정	· 체험학습	활동	14,880	14,880	0		
			1. 현장학	습	14,880	14,880	0		
				1.여비	1,555	1,555	0		
				2.교육운영비	13,325	13,325	0		
		3.동이	·리활동		3,120	3,120	0		
			1.동아리	활동	3,120	3,120	0		
				1.교육운영비	3,120	3,120	0		
		4.진로	활동		20,000	20,000	0		
			1. 중증장 (목적)	애학생 직업교육 운영	10,000	10,000	0		
				1.교육운영비	8,387	8,360	27	농산물 수확체험 프로그램 직무체험비 : -180,000 =	-180,000
								일상생활활동 직무체험비 : -53,000 =	-53,000
								자격증 시험 재료 구입비 : -224,000 =	-224,000
								농산물 수확체험 간식 및 식비 : -102,000 =	-102,000
								직무체험 간식 및 식비 : -20,000 =	-20,000
								대학 진로체험 간식 및 식비 : -50,000 =	-50,000
								직업교과 학습교구 및 실습재료비 : 6,560*20명*5회 =	656,000
				2.목적사업업무추진비	373	400	-27	협의회비 : -27,000 =	-27,000
				3.비품구입비	1,240	1,240	0		
			2.직업교 적)	육 중점학교 운영(목	10,000	10,000	0		
				1.교육운영비	9,514	9,504	10	125,000*4약급*2회 =	,000,000
								고등하고 진언교육 소개하기 프로그랜 체	-318,000
								직업교과 학습교구 및 실습재료비 : 134,000 =	134,000
								지어느려 개바 흐려 ㅍㄹㄱ래 우여비	-222,000

			사약		경정	기정	비교	المرام المتالية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					직업의 세계 프로그램 간식 및 식비 : -571,000 =	-571,000
								고등학교 직업교육 소개하기 프로그램 간 식 및 식비 : -13,000 =	-13,000
				2.목적사업업무추진비	486	496	-10	협의회비 : -10,000 =	-10,000
	3.자유	구학기(¹	년) 활동		8,000	8,000	0		
		1.자유학기(년)제활동			8,000	8,000	0		
					8,000	8,000	0		
				1. 일반수용비	300	300	0		
				2.교육운영비	7,500	7,500	0		
				3.일반업무추진비	200	200	0		
4.선택	택적 교	유활동		l	467,199	316,551	150,648		
	1. 방고	바후학교	1 운영		344,870	224,910	119,960		
		1. 방과	후학교운	영	344,870	224,910	119,960		
		1. 亚亚	1.교과프	로그램	322,870	224,910	97,960		
				1.운영수당	316,920	218,960	97,960	(목석) : 101,785원*4명*7월=	2,850,000
								(성립전_3추)방과후학교 강사비(목적) : 35,000원*230.42시간*1.7주=	13,710,000
								(성립전_3추)방과후학교 강사비(목적) : 35,000원*232.57시간*10주=	81,400,000
				2.교육운영비	5,950	5,950	0		
			2. 늘봄학 적)	교 맞춤지원 운영(목	22,000	0	22,000		
				1.일반수용비	11,728	0	11,728	(성립전_3추)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조성(트램펄린) : 2,395,000원*3대=	7,185,000
								(성립전_3추)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조성(심 리안정실 환경개선) : 2,271,500원*2실=	4,543,000
				2.교육운영비	10,272	0	10,272	(성립전_3추)진로프로그램 운영 : 1,000,000원*4대 =	4,000,000
								(성립전_3추)늘봄학교 운영 교재 교구 구 입 : 313,600원*10종*2회 =	6,272,000
	2.직업	결교육			83,960	53,272	30,688		
		1.직업	교육운영		83,960	53,272	30,688		
		1. 직업능	력개발훈련	21,882	23,019	-1,137			
			1.교육운영비	16,882	18,019	-1,137	진로상담실 운영비 : -500,000 =	-500,000	
							직업기능경진대회 운영비 : -637,000 =	-637,000	
				2.비품구입비	5,000	5,000	0		
I									

		사업		경정	기정	비교)] > = = (A) \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2. 장애학 운영(목조	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여)	44,238	30,253	13,985	
			1.기간제근로자인건비	39,105	26,544	12,561	(성립전_3추)직업실습생 인건비 : 39,500 원*6명*53일= 12,561,00
			2.교육운영비	700	700	0	
			3.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4,433	3,009	1,424	(성립전_3추)직업실습생 기관부담금 : 4,477원*6명*53일=
		3.직업실	기 역량강화(목적)	5,000	0	5,000	
			1.교육운영비	5,000	0	5,000	(성립전_3추)정리수납 자격증반 실습 재료 비 : 22,500원*36명=
							(성립전_3추)정리수납 자격증반 자격증 응 시료 : 50,000원*20명= 1,000,00
							(성립전_3추)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반 실 습 체험비 : 250,000원*8회= 2,000,00
							(성립전_3추)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반 실 습 재료비 : 40,000원*14명= 560,00
							(성립전_3추)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반 자 격증 응시료 : 90,000원*7명=
		4. 장애학 (목적)	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12,840	0	12,840	
		(54)	1.교육운영비	12,840	0	12,840	(성립전_3추)대학생활 체험 운영비 : 12,000,00 1,000,000원*12명=
							(성립전_3추)대학생활 체험 식비 및 간식 비 : 14,000원*12명*5일=
3.독서	활동			21,109	21,109	0	
	1.독서	활동운영		21,109	21,109	0	
		1.도서관	운영	21,109	21,109	0	
			1.일반수용비	459	459	0	
			2.교육운영비	3,350	3,350	0	
			3.비품구입비	2,000	2,000	0	
			4.도서구입비	15,300	15,300	0	
4.기티	ト 선택 ²	적 교육활	동	17,260	17,260	0	
	1.기타	-선택적교-	육운영	15,730	15,730	0	
		1.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930	930	0	
			1.교육운영비	450	450	0	
			2.목적사업업무추진비	480	480	0	
		2.기후변	· 화교육운영	2,000	2,000	0	
			1.교육운영비	2,000	2,000	0	
		3.학교현 적)	장실습학기제 운영(목	8,000	8,000	0	

			사업		경정	기정	月亚	パネット・ハハ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1.일반 수용 비	5,320	5,320	0	
				2.교육운영비	1,900	1,900	0	
				3.목적사업업무추진비	780	780	0	
			4. 학교현 비(전주다	장실습학기제 위탁교육 보조)	4,800	4,800	0	
				1.기타수당	3,200	3,200	0	
				2.교육운영비	1,600	1,600	0	
		2.다문	화교육운(ञ्चे ठ	1,530	1,530	0	
			1.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운영	1,530	1,530	0	
				1.교육운영비	1,530	1,530	0	
5. 亚垒	Ŷ활동 -	지원			231,328	199,735	31,593	
	1.교두	-업무 -	운영		14,225	14,375	-150	
		1.교무	학사운영		14,225	14,375	-150	
			1.교무학	사운영	1,500	1,650	-150	
				1.교육운영비	1,500	1,650	-150	교육실습생 실습물품 : -150,000 = -150,000
			2.교육활	동홍보 	5,025	5,025	0	
				1.교육운영비	5,025	5,025	0	
			3.환경정	리	7,700	7,700	0	
				1.일반수용비	5,000	5,000	0	
				2.비품구입비	2,700	2,700	0	
	2.생홑	·지도운	-영		19,460	17,160	2,300	
		1.학생	생활상담?	지도	10,660	10,660	0	
			1.위(Wee)클래스운영	2,000	2,000	0	
				1.교육운영비	2,000	2,000	0	상담수업용품구입 : -425,000 = -425,000
								성격 및 심리검사 도구 구입 : 225,000 = 225,000
								학부모 및 교직원 심리상담과 교육 : 200,000 =
			2. 행동중	재지원(목적)	2,500	2,500	0	
				1.교육운영비	2,250	2,250	0	
				2.목적사업업무추진비	250	250	0	

		사업	1	경정	기정	비교)] ~ = = (ol)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3.학교안	전지킴이 운영(목적)	6,160	6,160	0	
			1.일반 수용 비	6,160	6,160	0	
	2. 학교	<u>/</u> 폭력예방		8,800	6,500	2,300	
		1. 학교폭	력 전담기구 운영	100	400	-300	
			1.운영수당	100	400	-300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위원 여비) : -300,000 =
		2.불법촬	영카메라점검	0	100	-100	
			1.일반수용비	0	100	-100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비 : -100,000 = -100,000
		3.학교폭	력 예방지원(목적)	8,700	6,000	2,700	
			1.운영수당	6,500	3,800	2,700	(성립전_3추)강사비 : 30,000원*90시간= 2,700,000
			2.교육운영비	1,800	1,800	0	
			3.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200	200	0	
			4.목적사업업무추진비	200	200	0	
3.연·	구학교	운영		15,000	15,000	0	
	1.연구	'학교운영		15,000	15,000	0	
		1.연구학	교운영(목적)	15,000	15,000	0	
			1. 일반 수용 비	4,700	5,000	-300	연수비 : -400,000 = -400,000
							검증비 : 100,000 = 100,000
			2.교육운영비	8,050	7,750	300	교수학습자료 구입비 : 300,000 = 300,000
			3.목적사업업무추진비	2,250	2,250	0	
4.학	습지원실	<u></u> 운영		163,643	151,200	12,443	
	1.정보	화실운영		163,643	151,200	12,443	
		1.학교정	보화지원	21,643	21,200	443	
			1. 일반수용비	10,248	11,600	-1,352	컬러복사기 임대료 : -1,200,000 = -1,200,000
							컴퓨터유지보수관리 : -152,000 = -152,000
			2.교육운영비	6,895	5,100	1,795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 -5,000 = -5,000
							전산용품 및 방송장비 유지관리 : 1,800,000 =
			3.비품구입비	4,500	4,500	0	
		2.스마트 (목적)	칠판 및 칠판장 보급	130,000	130,000	0	

			사업		경정	기정	비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1.비품구입비	130,000	130,000	0		
			3.디지털	튜터 운영(목적)	12,000	0	12,000		
				1.기간제근로자인건비	10,780	0	10,780	(성립전_3추)강사비 : 35,000원*308시간=	10,780,000
				2.여비	20	0	20	출장여비 : -225,000 =	-225,000
								(성립전_3추)출장여비 : 35,000원*7일=	245,000
				3.교육운영비	300	0	300	운영물품 구입 : 255,000 =	255,000
								(성립전_3추)운영물품 구입 : 45,000원*1 회=	45,000
				4.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300	0	300	고용산재보험료 : -30,000 =	-30,000
								(성립전_3추)고용산재보험료 : 55,000원*6 개월=	330,000
				5.목적사업업무추진비	600	0	600	(성립전_3추)협의회비 : 600,000원*1회=	600,000
	5.교육	낚여건 :	개선		19,000	2,000	17,000		
		1.교육	h환경개선		19,000	2,000	17,000		
			1.교내환	경개선	2,000	2,000	0		
				1.비품구입비	2,000	2,000	0		
			2.교수학	습환경개선(목적)	17,000	0	17,000		
				1.일반 수용 비	4,680	0	4,680	(성립전_3추)놀이시설 보수 : 4,680,000원 *1식=	4,680,000
				2.비품구입비	12,320	0	12,320	(성립전_3추)체육기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 6,160,000원*2개=	12,320,000
6.학교	교 일반	운영			304,637	281,211	23,426		
	1.학교	2기관 -	운영		72,130	72,132	-2		
		1.부사	기본운영		72,130	72,132	-2		
			1.교장실	운영	5,620	5,572	48		
				1. 일반업무추진비	1,900	1,900	0		
				2.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20	3,672	48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48,000 =	48,000
			2. 행정실	운영	48,350	48,350	0		
				1.일반수용비	11,060	11,060	0		
				2.운영수당	400	400	0		
				3.기타공공요금	400	400	0		
				4.여비	29,500	29,500	0		

			사업]	경정	기정	비교	NG 12/A)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5. 교직원복지비	3,270	3,270	0		
				6. 일반업무추진비	720	720	0		
				7.비품구입비	3,000	3,000	0		
			3.교무부	운영	18,160	18,210	-50		
				1.일반수용비	6,979	6,600	379	특수교육지도사실 운영비 : 379,000 =	379,000
								교육과정운영 워크숍 차량 임차료 : -600,000 =	-600,000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비 : 50,000*12회 =	600,000
				2.교육운영비	1,550	1,600	-50	교육과정설명회관련경비 : -50,000 =	-50,000
				3. 일반업무추진비	9,510	9,510	0		
				4.비품구입비	121	500	-379	특수교육지도사실 비품 구입 : -379,000 =	-379,000
	2.시설	보 장비	유지		230,207	206,779	23,428		
		1.학교	!시설장비-	유지	230,207	206,779	23,428		
			1.공공요	금및제세공과금	107,253	106,253	1,000		
				1.전기요금	71,000	70,000	1,000	전기요금 : 1,000,000 =	1,000,000
				2. 상하수도료	18,000	18,000	0		
				3.기타공공요금	18,253	18,253	0		
			2.연료비		1,100	1,100	0		
				1. 연료비	1,100	1,100	0		
			3.시설관	리용역	18,183	17,787	396		
				1.일반 수용 비	18,183	17,787	396	전기안전관리 용역 : 396,000 =	396,000
			4.시설일	반관리	83,684	61,751	21,933		
				1.일반수용비	83,684	61,751	21,933	소규모 시설 수선 : 21,933,000 =	21,933,000
			5. 화장실	관리	11,688	11,688	0		
				1.일반수용비	11,688	11,688	0		
			6. 당직관	리 	2,019	1,920	99		
				1.일반수용비	2,019	1,920	99	무인기계용역 : 99,000 =	99,000
			7.청소원	관리	4,680	4,680	0		
				1. 공무직인건비	4,680	4,680	0		

사업					경정	기정	비교	11 - - 1 - (01)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 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원)
			8.장애인	고용장려금(목적)	1,600	1,600	0	
				1.일반수용비	400	400	0	
				2.전기요금	1,040	960	80	전기요금 : 80,000 = 80,000
				3.목적사업업무추진비	160	240	-80	협의회비 : -80,000 = -80,000
	3.학교	교운영 협력			2,300	2,300	0	
		1. 학교운영위원회운영			800	800	0	
			1.학교운	영위원회운영	800	800	0	
				1. 일반업무추진비	800	800	0	
		2. 학부모협력			1,500	1,500	0	
			1. 학부모회운영		1,500	1,500	0	
				1.일반수용비	1,200	800	400	학부모 교육 운영비 : 400,000 = 400,000
				2.운영수당	0	400	-400	강사비 : -400,000 = -400,000
				3. 일반업무추진비	300	300	0	
7.학교 재무활동					0	6,000	-6,000	
	1.예비비				0	6,000	-6,000	
		1.예비	예비비		0	6,000	-6,000	
			1.예비비		0	6,000	-6,000	
				1.예비비	0	6,000	-6,000	예비비 : -6,000,000 = -6,000,000
세출합계					2,419,811	2,131,856	287,955	